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0. 6. 17(수)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이홍민 의원 외 7명
- 제안일 : 2020. 5. 29.
- 회부일 : 2020. 5. 29. (의안번호 : 20-76)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추천대상 등(안 제2조)
- 추천요청(안 제3조)
- 자료의 요구 및 제출(안 제4조)
-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안 제5조)
- 서면 통보 등(안 제6조)

-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안 제7조)
- 의견제시(안 제8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5.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이홍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목적 및 추천대상 등에 관한내용임.
- (안 제3조, 안 제4조)에는 추천요청 과 자료의 요구 및 제출에 관한내용임.
- (안 제5조, 안 제6)에는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와 서면 통보 등에 관한 내용임.
- (안 제7조, 안 제8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에 관한내용 과 의견제시 사항에 대한 내용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마포구의회 의장이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사안에 따라 집행부와 의견충돌은 불가피하며 이는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집행부와 의회는 마포구를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로써 견제와 균형, 이해와 배려,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갈등으로 인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추천과 인사 운영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료됨.